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3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고영인·서동용·권칠승

이장섭 • 윤재갑 • 이원택

전재수 · 최혜영 · 인재근

이동주 · 맹성규 · 김성주

박영순 • 윤관석 • 서영석

조오섭 · 송옥주 · 황운하

임호선 · 신정훈 · 윤건영

의원(21인)

제안이유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 사업 장, 시설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확산을 막고 있으나, 집단 발병 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의료인에 대한 동원 근거는 있으나 의료기관 병상 등 동원의 근거는 없어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지 침 준수 명령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 하고, 의료기관 병상 등 동원 및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역조 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거나 국민 또는 감염에 취약한 사람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 다. 의료기관 병상 및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시 손실보 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0조제1항제4호).
- 라.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83 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하여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2의3. 국민 또는 감염에 취약한 사람에 대하여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2의4. 국민 또는 감염에 취약한 사람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제70조제1항제4호 중 "제12호"를 "제12호, 제12호의2"로 한다.

제83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2의2.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9조제1항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	
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하여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
	<u>하는 것</u>
<u> <신 설></u>	2의3. 국민 또는 감염에 취약한
	사람에 대하여 방역지침 준수
	를 명하는 것
<u> <신 설></u>	2의4. 국민 또는 감염에 취약한
	사람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금
	지하는 것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u>
	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
	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 14. (생략)	13.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 제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5. (생략)
- ② ~ ④ (생 략)

제83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u><신</u> 설>

3. ~ 5. (생 략) <신 설>

제70조(손실보상) ①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2호, 제12호의2</u>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A)
<u></u>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3. ~ 5.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 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3의 조치
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
를 따르지 아니한 자
<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